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21629
----------	-------

제안연월일 : 2026. 9.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2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건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295	소병훈	2026.4.13.	2026.9.11.
	2218939	이수진	2026.5.13.	2026.9.11.

나.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9. 16.)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6. 9. 17.)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위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신청하도록 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보장급여의 내용이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위기 상황 등으로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적기에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도록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이 없더라도 조사·확인·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11조).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보장을 위하여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신청”을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확인·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임)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 든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 리 보장을 위하여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 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u>신청</u>)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u>신청 등</u>)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 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조사·확인·심사 등 필요 한 절차를 거쳐 사회보장급여 를 지급할 수 있다.</u>